

# 『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5일

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발주 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 
건설업체의 일반 건설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 
폐지하여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 
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다. 주요내용

○ 「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」의 폐지

## 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건설기계대여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」은

- 구미시 발주 공사에 시 보유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 
현행 조례를, 민간중장비업체 수요 증가로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 
경쟁제한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
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